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통 상 국
노 동 복 지 과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여 일부 조항 용어의 정의와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내용·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변경하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다문화가족』 용어 반영(안 제2조제3호)

다.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추가(안 제6조제2항)

라. 「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변경 (안 제7조~안 제12조)

(1)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명칭 변경

(2) 협의회 기능 수정

(3) 위원의 해촉 추가

마.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명확화(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다문화가족지원법」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3) 「국적법」
-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 (5)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

라. 기 타 : 신규대비표 붙임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외국인주민들”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외국인주민”이란 함은”을 ““외국인주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2조제4호 중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외국인주민”을 각각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국인주민들”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를 “지원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평가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에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고충·생활·법률·취업·인권 등 상담
- 3. 생활편의 제공, 긴급보호 및 구호
- 4.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출산용품 지원,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다문화자녀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
 8.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체육·합동결혼식 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시책위원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책위원회의 설치)”를 “(협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

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학계, 언론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5. 구미시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제7조제3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협의회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로, “자문 및 심의기능”을 “협의 또는 자문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를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회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위원회의”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2장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1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위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을 “참석수당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구미시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의 제목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다문화”를 “세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문화”를 “세계인”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미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 위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협약 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u>	<u>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u> <u>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u>외국인주민들의</u> 지역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 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 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 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 <u>외국인주</u> <u>민 및 다문화가족</u>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외국인주민”이란</u> 함은 구미 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 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 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 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 <u>“외국인주민”이란</u> ----- ----- ----- ----- ----- ----- -----.
3. <u>“외국인주민 가정”이란</u> 국내 <u>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u>	3. <u>“다문화가족”이란</u> 다음 각 <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
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
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
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
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
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
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
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
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
문화가족-----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지원대상)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

-----.

②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

②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평가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에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생략)

1. (생략)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인권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 및 긴급구호 등)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 7.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고충·생활·법률·취업·인권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긴급보호 및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5. ~ 7. (현행과 같음)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출산용품 지원,

<신 설>

제2장 시책위원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 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다문화자녀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

8.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체육·합동결혼식 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지원업무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구미고용종합지원센터·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시·도의원, 외국인지원단체관계자, 외국인 등 외국인주민 복지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사회에 적극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학계, 언론인 등 외국인주민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
할 수 있는 자

5. 구미시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③ 협의회-----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

-----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협회의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과 관련하여 -- 협의 또는 자문
기능-----.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제9조(위원장) ----- 협의 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

-----.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

<후단 삭제>

<신 설>

제11조(간사)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

- 참석수당을-----
-----.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3조(구미시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미시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시책,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 운영한다.

제14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사업 추진 등

제13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15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신 설>

를」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

제16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구미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17조(포상) 시장은 국내 외국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세계인의 날) 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세계인 -----
--.

② -----
세계인 -----

---.

1. ~ 4. (형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포상) 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

-.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미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u> 1. <u>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u> 2. <u>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u> ② <u>그 밖에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미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u> <u><신 설></u> <u>제20조 (생 략)</u>	<u>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u> <u>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u>
---	---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과 실·과		노동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남 동 수
	담 당	김 교 화
	담 당 자	김 현 진 (480-6233)